

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1개의 시설물 또는 택지가 서로 다른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주민의 불편과 행정이 비효율화 예상됨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5. 6. 23부로 「부산광역시 서구 등 4개 시·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」이 공포됨에 따라 감천1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사하구에서 제외하여 서구에 편입시키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 조정함 (안 별표)
 - "감천동의 관할구역" 중 373번지부터 375번지까지, 산166의1번지, 산166의6번지, 산166의9번지, 산166의13번지, 산166의14번지, 산166의16번지, 산166의26, 산166의30번지, 산166의31번지를 각각 제외함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1항 및 제3항
- 「부산광역시 서구 등 4개 시·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」
(대통령령 제18872호)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에 미치는 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재조정 하기위해 2004년 10월 제121회 임시회시 본 건과 관련된 사하구의회의 “별다른 의견 없다”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
- 이에 근거하여 2005. 6. 23부로 「부산광역시 서구 등 4개 시·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」이 대통령령 제18872호로 공포되어 1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「사하구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」도 동시에 개정토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됨